



의안번호	제 2022 - 12호
보 고 연 월 일	2022. 5. 2. (제11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146차 전체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2
 - 1. 개관 2
 - 2. 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7
 - 3. 권고 형량범위 13
 - 4. 양형인자 25
 - 5. 집행유예 기준 36

- III. 향후 일정 38

【별첨】

이재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최재아, 김한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관련 의견”
최익구,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관련 의견”

I. 제146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2. 4. 18.(월) 15:30 ~ 19: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개관

가.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1)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개정에 따른 수정 방안

○ 개정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신 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3. 23. 개정으로 벌금 상향(5천만원)
형법	형법 [법률 제1726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 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설정대상 추가 여부, 범죄유형 분류 수정 여부 등 검토

(2)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른 수정 방안

○ 개정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p>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4조(특수강간 등)</p> <p>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4조(특수강간 등)</p> <p>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	--

- 권고 형량범위 수정 여부 등 검토

(3) 현행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불균형 등에 따른 수정 방안

- 결과적 가중범(상해/사망) 등과 기본범죄 사이의 불균형 문제 검토
 -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유형 분류와 양형인자 적용이 결합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이 발생함
- 특정강력범죄(누범) 등과 동종 누범 사이의 불균형 문제 검토
 - 누범 인자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이 발생함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범죄의 포섭 범위와 양형인자 문제 검토
 - 특수강도유사강간의 포섭 여부,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양형인자에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할 것인지 검토

(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등 반영에 따른 수정 방안

-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여부 등 검토

나. 양형기준 대상 성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1) 적용법조에 따른 분류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297/§299	폭행·협박으로 강간/준강간	3년 ↑
	§297-2/§299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준유사강간	2년 ↑
	§298/§299	폭행·협박으로 추행/준강제추행	10년 ↓
	§301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무기, 5년 ↑
	§301-2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무기, 10년 ↑
	§305①	13세 미만 자에 대한 간음/유사성교/추행	위에 따름
	§305②	19세 이상 자의 13세 이상 16세 미만 자에 대한 간음/유사성교/추행	위에 따름 (신설)
	§305-2	§297 내지 300, §305의 상습범	1/2 가중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
군형법	§92/§92-4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 강간/준강간	5년 ↑
	§92-2/§92-4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유사강간/준유사강간	3년 ↑
	§92-3/§92-4	폭행·협박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년 ↑
	§92-7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무기, 7년 ↑
	§92-8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무기, 10년 ↑
성폭력 처벌법	§3①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무기, 7년 ↑ (종전 무기, 5년 ↑)
	§3②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자가 강간/준강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형, 무기, 10년 ↑
	§4①, ③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무기, 7년 ↑ (종전 무기, 5년 ↑)
	§4②, ③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5년 ↑ (종전 3년 ↑)
	§5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7년 ↑
	§5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5년 ↑
	§6①, ④	장애인을 강간/준강간	무기, 7년 ↑
	§6②, ④	장애인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5년 ↑
	§6③, ④	장애인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3년 ↑
	§6⑤	장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5년 ↑
	§6⑥	장애인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1년 ↑
	§6⑦	장애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1/2 가중
	§7①, ④, ⑤	13세 미만 자를 강간/준강간	무기, 10년 ↑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3세 미만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7②, ④, ⑤	13세 미만 자를 유사강간/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교	7년 ↑
	§7③, ④, ⑤	13세 미만 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3세 미만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제추행	5년 ↑
	§8①	§3①, §4, §6, §7(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무기, 10년 ↑
	§8②	§5(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무기, 7년 ↑
	§9②	§4, §5(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무기, 10년 ↑
	§9③	§6, §7(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사형, 무기, 10년 ↑
청소년 정보 호법	§7①, ⑤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무기, 5년 ↑
	§7②, ⑤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교	5년 ↑
	§7③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2년 ↑
	§8①	19세 이상 자가 장애 아동·청소년(13세 이상)을 간음 또는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함	3년 ↑
	§8②	19세 이상 자가 장애 아동·청소년(13세 이상)을 추행 또는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함	10년 ↓
	§8-2①	19세 이상 자가 공박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 또는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함	3년 ↑ (신설)
	§8-2②	19세 이상 자가 공박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추행 또는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함	10년 ↓ (신설)
	§9	§7(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무기, 7년 ↑
	§10②	§7(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사형, 무기, 10년 ↑
	§18	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가중
특정 범죄 가중 법	§5-5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재범한 경우	사형, 무기, 10년 ↑
특정 강력 범죄 법	§3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장기, 단기의 2배까지 가중

(2) 대상에 따른 분류

구성요건	19세 이상	군인	13~18세	장애인	13~15세(신설)	13세 미만	
의제추행	×	×	×	10↓(청)(13~18세)	10↓(형)	10↓(형)	
의제유사강간	×	×	×	×	2↑(형)	2↑(형)	
의제강간	×	×	×	3↑(청)(13~18세)	3↑(형)	3↑(형)	
공박 추행	×	×	×	×	10↓(청)	×	
공박 유사성교	×	×	×	×	×	×	
공박 간음	×	×	×	×	3↑(청)	×	
위계위력 추행	×	×	2↑(청)	1↑(성)	×	5↑(성)	
위계위력 유사성교	×	×	5↑(청)	×	×	7↑(성)	
위계위력 간음	×	×	무, 5↑(청)	5↑(성)	×	무, 10↑(성)	
(준)강제추행	10↓(형)	1↑(군)	2↑(청)	3↑(성)	×	5↑(성)	
(준)유사강간	2↑(형)	3↑(군)	5↑(청)	5↑(성)	×	7↑(성)	
(준)강간	3↑(형)	5↑(군)	무, 5↑(청)	무, 7↑(성)	×	무, 10↑(성)	
친족	(준)강제추행	5↑(성)					
	(준)유사강간	×					
	(준)강간	7↑(성)					
특수	(준)강제추행	(3)5↑(성)					
	(준)유사강간	×					
	(준)강간	무기, (5)7↑(성)					
주거 침입 등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무기, (5)7↑(성)					
	강도강간	무기, 10↑(형)					
특수 강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	사, 무, 10↑(성)					
상해/치상	일반	무, 5↑(형)	무, 7↑(군)	무, 7↑(청)	무, 10↑(성) *장애청소년 의제추행/강간 제외	무, 5↑(형) *공박추행/간음 제외	무, 10↑(성) *의제강간 등은 무, 5↑(형)
	친족	무, 7↑(성)					
	특수, 침입	무, 10↑(성) *특수강도 제외					
치사	일반	무, 10↑(형)	사, 무, 10↑(군)	사, 무, 10↑(청)	사, 무, 10↑(성) *장애청소년 의제추행/강간 제외	무, 10↑(형) *공박추행/간음 제외	사, 무, 10↑(성) *의제강간 등은 무, 10↑(형)
	친족, 특수	무, 10↑(성)					
	침입	×(특수강도도 ×)					

※ (형)은 형법, (군)은 군형법, (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성)은 성폭력처벌법을 뜻함

※ ① 친족·특수·주거침입등·강도·특수강도 강간 등과 ② 13세 미만·장애인·청소년 강간 등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상해/치상, 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가. 설정 범위(의견일치)

(1) 아동·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 추가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있음. 이에 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도 처벌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신설됨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신설 취지와 제8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설정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2)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추가

-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
- 13세 미만 의제강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점, 의제강간 등 연령기준의 상향 취지와 종전 13세 미만 의제강간 등 처벌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설정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성범죄) 가중처벌: 추가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바목(강간 등),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무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가 적용됨에도 성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됨

나. 유형 분류

(1) 아동·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공박 상태 이용 간음·

추행: **대유형 1.의 중유형 다.에 신설 범죄 부기(의견일치)**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이용 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이용 간음은 2유형에 포함**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과 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함
 (이하 생략)

- 현행 양형기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유형 중 하나로 포섭하면서 해당 형량기준과 양형인자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그 신설 취지, 규정의 배치, 체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조와 같이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서 처벌하는 행위의 유형, 대상, 법정형 등이 같은 법 제8조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모두 이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형량기준과 양형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2)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가) 대유형 1.의 중유형 라. 및 대유형 2.의 중유형 나.에 신설 범죄 부기(의견일치)

[01. 일반적 기준/ 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이하 생략)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이하 생략)

- 형법 개정으로 의제강간 등 연령기준이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에서는 여전히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양형기준상 중유형 분류의 연령기준인 13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그 신설 취지, 규정의 배치, 체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05조 제1항과 같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처벌하는 행위의 유형, 대상, 법정형,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와 법정형 등이 같은 법 제305조 제1항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형량기준과 양형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나) 1.의 라. 중유형 및 2.의 나. 중유형의 제목(견해대립)

제1안(9인 지지)	제2안(4인 지지)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포함)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포함)

- 제1안(9인 지지): 기존 중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강제추행’이 추가되는 것이고 16세 미만에 대한 모든 성범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님. ‘16세 미만 포함’은 문구 자체로 모순되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제강간 등’을 부기
- 제2안(4인 지지): 제목은 최대한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6세 미만 포함’으로 축약

(3)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특수강도 관련 서술식 기준 수정
(의견일치)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이상 생략)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증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증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증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 특수강도유사강간의 포섭 명시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에서는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을 3유형(강도강간) 중 하나로 분류하고,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에서는 특수강도강제추행만을 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런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에서는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한 경우는 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포섭하고,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경우는 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면서, ‘특수강도유사강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음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양형인자에 '특수강도범인 경우' 추가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한 상해/치상의 경우, 강간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므로 '특수강도범인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됨
 - 그런데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치상의 경우,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더라도 위 양형인자표에 '특수강도범인 경우'가 없어 위 사유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되지 않음(이는 강제추행죄의 유형 분류상 특수강도강제추행만 3유형의 범죄로 분류되고, 이를 전제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치상의 경우에는 5유형의 범죄 중 하나로 포섭되었으므로, '특수강도범인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함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성범죄) 가중처벌: **유형의 정의 추가(의견일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내지 제3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바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3. 권고 형량범위

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 상향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④청소년 강간	3년-5년6월 <u>2년6월 - 5년</u>	5년-8년 <u>4년 - 7년</u>	6년 - 9년
23	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②주거침입 등 강간/ ③특수강간	3년-5년6월 <u>3년6월 - 6년</u>	5년 - 8년	6년-9년 <u>7년 - 10년</u>
3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이하 생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④청소년 강간	<u>3년 - 5년6월</u>	<u>5년 - 8년</u>	6년 - 9년
23	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②주거침입 등 강간/ ③특수강간	3년-5년6월 <u>3년6월 - 6년</u>	5년 - 8년	6년-9년 <u>7년 - 10년</u>
3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이하 생략)

(가) 유형재분류 및 ① 내지 ③범죄 형량범위(의견일치)

- 2유형의 범죄들은 법정형의 일부 차이(① 7년↑, ②·③ 무, 5년↑, ④ 무, 5년↑ or 5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위험성, 죄질과 가벌성,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음
-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②·③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무, 5년↑ ⇒ 무, 7년↑), ④범죄를 제외한 ① 내지 ③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모두 7년이 되었는바, 그 유형을 재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① 내지 ③범죄

-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성범죄[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와 ‘① 내지 ③범죄로 인한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감경영역(4년 - 7년), 기본영역(6년 - 9년), 가중영역(8년 - 12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감경영역(4년 - 7년), 기본영역(6년 - 9년), 가중영역(8년 - 12년) ⇨ ①범죄가 기본범죄
감경영역(6년 - 9년), 기본영역(8년 - 13년), 가중영역(12년 - 16년) ⇨ ②③범죄가 기본범죄

○ 참고: 형량분포(2016. 1. 1. ~ 2020. 12. 31.)

[주거침입 등 강간]	평균: 42.87월, 분포: 3년(42.7%), 5년·2년6월(각 14.6%), 범위: 2년~7년
[특수강간]	평균: 41.61월, 분포: 3년(42.7%), 2년6월(22%), 범위: 1년6월~13년
[친족관계 강간]	평균: 59.12월, 분포: 5년(30.9%), 4년(21.8%), 범위: 2년~10년

(나) ④범죄(청소년 강간)의 권고 형량범위(견해대립)

○ 제1안(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으로 하향, 11인 지지)

- 기존에 법정형이 다른 4가지 범죄를 하나의 소유형으로 묶어 감경영역의 하한을 3년으로, 기본영역의 하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
-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성범죄[군인등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감경영역 하한은 통상 법정형의 1/2로 정해짐)와 ‘④범죄로 인한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기존

의 형량범위는 치상범죄와 기본범죄의 기본영역이 5-8년으로 동일하여 불균형이 있었음)

[군인등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감경영역(2년6월 - 5년), 기본영역(4년 - 7년), 가중영역(6년 - 9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감경영역(3년6월 - 6년), 기본영역(5년 - 8년), 가중영역(7년 - 10년) ④범죄가 기본범죄

- 양형통계를 보더라도 징역 3년이 35.75%, 징역 2년6월이 34%로서 감경영역은 하향 조정되어야 함.

※ 참고: 형량분포(2016. 1. 1. ~ 2020. 12. 31.)

[청소년 강간 등] 평균: 38.58월, 분포: 3년(35.75%), 2년6월(34%), 범위: 1년6월~14년

- 대법원은 최근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확장하는 판시를 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다양한 행위태양 및 범주를 모두 포섭하자면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2안(현행유지, 2인 지지)

- 청소년 강간의 법정형(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 유사강간은 5년↑)에 변동이 없으므로 형량범위를 하향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청소년강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시점 이후 양형통계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근 청소년강간에 대한 선고형은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기존 양형기준이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감경 없이 2유형에 포섭하였고, 이에 따라 법정형의 변동이 없는 청소년 강제추행의 형량 범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청소년 강간만

을 하향할 이유가 없음

- 법정형이 상향된 주거침입 등 강간(강제추행), 특수강간(강제추행)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와 별개로 청소년 강간의 형량범위를 하향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형기준의 형량범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 및 이를 실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형량범위 유지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유형 재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조정(의견일치)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④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23	①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③특수강제추행	1년6월-3년 <u>2년6월 - 4년</u>	2년6월-5년 <u>3년 - 6년</u>	4년-7년 <u>5년 - 8년</u>
4	②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1년6월-3년 <u>3년6월 - 5년</u>	2년6월-5년 <u>4년 - 7년</u>	4년-7년 <u>6년 - 9년</u>
35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되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이하 생략)

- 2유형의 범죄들은 법정형의 차이(① 5년 ↑, ② 무, 5년 ↑, ③ 3년 ↑, ④ 2년 ↑)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위험성, 죄질과 가벌성,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음
-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②·③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② 무, 5년 ↑ ⇒ 무, 7년 ↑, ③ 3년 ↑ ⇒ 5년 ↑), ④범죄를 제외한 법정형 하한이 ①·③범죄는 5년, ②범죄는 7년이 되었는바, 그 유형을 재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④범죄

- ‘법정형 하한이 2년 또는 3년인 성범죄[일반강간(유사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의제간음/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와 ‘④범죄로 인한 상해/치상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일반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의제간음/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감경영역(1년6월 - 3년), 기본영역(2년6월 - 5년), 가중영역(4년 - 6년 or 7년) ⇨ 3년
감경영역(1년 - 2년), 기본영역(1년8월 - 3년4월), 가중영역(2년8월 - 4년 or 4년8월)
⇨ 2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감경영역(2년6월 - 5년), 기본영역(4년 - 7년), 가중영역(6년 - 9년) ⇨ ④범죄가 기본범죄

- 참고: 형량분포(2016. 1. 1. ~ 2020. 12. 31.)

[청소년 강제추행 등] 평균: 15.08월, 분포: 1년(48.8%), 2년(20.9%), 범위: 6월~7년

○ ①·③범죄와 ②범죄

-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성범죄[군인등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 ‘법정형 하한이 7년인 성범죄[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범위 및 ‘① 내지 ③범죄로 인한 상해/치상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함

[군인등강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감경영역(2년6월 - 5년), 기본영역(4년 - 7년), 가중영역(6년 - 9년) ⇨ 5년(①,③)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감경영역(4년 - 7년), 기본영역(6년 - 9년), 가중영역(8년 - 12년) ⇨ 7년(②)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감경영역(3년6월 - 6년), 기본영역(5년 - 8년), 가중영역(7년 - 10년) ⇨ ①범죄가 기본범죄

감경영역(5년 - 8년), 기본영역(7년 - 11년), 가중영역(10년 - 14년) ⇨ ②③범죄가 기본범죄

- 참고: 형량분포(2016. 1. 1. ~ 2020. 12. 31.)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평균: 31.09월, 분포: 2년6월(77%), 3년(13.2%), 범위: 6월~7년

[특수강제추행] 평균: 20.75월, 분포: 1년6월(64.8%), 2년(17%), 범위: 10월~3년

[친족관계 강제추행] 평균: 32.12월, 분포: 2년6월(70.5%), 3년(22.5%), 범위: 1년6월~5년

- 한편 아래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과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정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비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다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1헌가9, 2021헌가13, 2021헌가17, 2021헌가20, 2021헌가22, 2021헌가25, 2021헌가27, 2022헌가1, 2022헌가2, 2022헌가4)이 있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계속 중임

나. 결과적 가중범(상해/사망) 등과 기본범죄 사이의 불균형

(1) 발생 국면

(가) 상해/치상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인자)로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다른 양형조건이 동일한 기본범죄보다 가벼운 형량범위가 권고되는 유형이 있음¹⁾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분	상해/치상범죄 감경영역	기본범죄 기본영역	기본범죄 가중영역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1년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2년6월 - 5년		2년8월 - 4년8월
성년 유사강간	2년6월 - 5년		2년8월 - 4년8월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4년 - 7년
청소년 강간 (위계·위력강간 포함)	3년6월 - 6년		6년 - 9년

1) 음영 표시 부분이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형임. ① 노란색 부분은, 경미한 상해와 함께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가 인정되어 상해/치상범죄의 경우 감경영역이, 기본범죄의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될 경우,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형이고, ② 초록색 부분은, 위 ①의 경우 뿐만 아니라, 경미한 상해만 인정되어 상해/치상범죄의 경우 감경영역이, 기본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이 적용될 경우에도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형임

구분	상해/치상범죄 감경영역	기본범죄 기본영역	기본범죄 가중영역
청소년 유사강간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3년6월 - 6년	5년 - 8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5년 - 8년	6년 - 9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4년 - 7년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6년 - 9년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포함)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구분	상해/치상범죄 감경영역	기본범죄 기본영역	기본범죄 가중영역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1년6월 - 3년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6년
의제유사강간	2년6월 - 5년		2년8월 - 4년
강제추행	5년 - 8년		4년 - 6년(장애인)
			6년 - 9년(13세미만)
위계·위력추행	5년 - 8년		2년 - 3년(장애인)
			6년 - 9년(13세미만)
유사강간	5년 - 9년		6년 - 9년(장애인)
		6년 - 9년(13세미만)	8년 - 12년(13세미만)
위계·위력유사성교	5년 - 9년		6년 - 9년(장애인)
		6년 - 9년(13세미만)	8년 - 12년(13세미만)
강간	6년 - 10년		8년 - 12년(장애인)
		8년 - 12년(13세미만)	11년 - 15년(13세미만)
위계·위력간음	6년 - 10년		8년 - 12년(장애인)
		8년 - 12년(13세미만)	11년 - 15년(13세미만)

○ 균형법상 성범죄

구분	상해/치상범죄 감경영역	기본범죄 기본영역	기본범죄 가중영역
군인등강제추행	2년6월 - 5년		2년 - 4년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간	3년6월 - 6년		4년 - 7년(유사강간)
		4년 - 7년(강간)	6년 - 9년(강간)

(나) 치사범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함²⁾

-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행위인자)로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치사범죄의 감경영역(9년 - 12년)이 기본범죄의 가중영역(위 표 참조)보다 낮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게 됨

(2) 수정안: 서술식 기준 부기(의견일치)

<p>[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³⁾</p> <p>(유형 및 권고 형량범위 표 생략)</p> <p>▷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p> <p><u>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u></p> <p>[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p> <p>(유형 및 권고 형량범위 표 생략)</p> <p>▷ <u>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u></p>
--

- ① 행위인자 우월 원칙의 적용 배제, ② ‘경미한 상해’ 등 특별감경인자의 삭제, ③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①방안의 경우, 형량범위 불균형이 여전히 남게 되는 점(청소년 강간, 13세 미만 강간, 강도강간 등의 상해/치상범죄 기본영역이 기본범죄 가중영역보다 낮음), 성범죄에서만 행위인자 우월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움
- ②방안의 경우, 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량범위가 설정된 점, 결과 불법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

2) ‘경미한 상해’가 상해/치상범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거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치사범죄의 특별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범죄군들, 즉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폭력, 방화,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3)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균형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해당 서술식 기준에 부기

기 어려움

- ③방안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범죄유형 분류의 체계, 각 유형의 가벌성과 법정형 하한,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것인바, 일부 불균형의 발생만으로 전체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 점, 불균형 발생 유형의 형량범위 조정은 해당 유형의 영역별 형량범위 사이의 관계, 인접 유형의 영역별 형량범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움

예시) 일반강간으로 인한 상해/치상범죄와 기본범죄

- 상해/치상 감경영역 2년6월~5년, 기본범죄 기본영역 2년6월~5년, 기본범죄 가중영역 4년~7년
- 상해/치상 감경영역을 기본범죄 가중영역보다 높게 설정하려면 형량범위가 4년~7년보다 높게 변경되어야 함. 일반강간으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 하한이 4년보다 높다는 것은 지나침
- 기본범죄 가중영역을 상해/치상의 감경영역보다 낮게 설정하려면 형량범위가 2년6월~5년보다 낮게 변경되어야 함. 일반강간에서 동종 누범 등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범위가 2년6월~5년보다 낮다는 것은 수공하기 어려움
- 이를 절충하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유형의 형량범위를 조정할 경우 범죄유형 분류의 체계상 인접 유형의 형량범위도 연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참고

[02. 상습공갈 · 특수공갈 · 누범공갈]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다. 특정강력범죄 등 누범과 동종 누범 사이의 불균형

(1) 발생 국면

(가) ‘특정강력범죄(누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한 성격의 양형인자인 ‘동종 누범’〔특별가중인자(행위자인자)]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형량 범위가 권고되는 유형이 있음⁴⁾

○ 13세 이상 강간죄/강제추행죄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일반강간	2년3월 - 4년6월	2년6월 - 5년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4년6월 - 8년3월	5년 - 8년		
강도강간	7년6월 - 13년6월	8년 - 12년		
일반강제추행	1월15일 - 1년6월	6월-2년	9월 - 3년	1년6월-3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4년6월	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	7년6월 - 12년	7년 - 11년		

○ 장애인(13세 이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의제추행	1월15일 - 1년3월	8월 - 2년	1년 - 3년	1년6월 - 3년
의제간음/강제추행	2년3월 - 4년6월	2년6월 - 5년	3년9월 - 7년6월	4년 - 6년
유사강간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강간	6년 - 10년6월	6년 - 9년		
의제강제추행	1월15일 - 1년3월	8월 - 2년	1년 - 3년	1년6월 - 3년
의제강간	2년3월 - 4년6월	2년6월 - 5년	3년9월 - 7년6월	4년 - 6년
강제추행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유사강간	6년 - 10년6월	6년 - 9년		
강간	9년 - 13년6월	8년 - 12년		

4) 음영 표시 부분이 권고 형량범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형임. ① 노란색 부분은,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 특정강력범죄(누범) 등의 경우 감경영역이, 동종 누범의 경우 기본영역이 적용될 경우,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형이고, ② 초록색 부분은, 다른 특별감경인자가 없어 특정강력범죄(누범) 등의 경우 기본영역이,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될 경우, 불균형이 발생하는 유형임

○ 균형법상 성범죄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군인등강제추행	9월 - 2년	10월 - 2년6월	1년3월 - 3년9월	2년 - 4년
군인등유사강간	2년3월 - 4년6월	2년6월 - 5년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군인등강간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일반강제추행	3년9월 - 6년	3년 - 5년		
일반강간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3월 - 9년	5년 - 8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6년 - 10년6월	6년 - 9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7년6월 - 12년	7년 - 11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9년 - 13년6월	8년 - 13년		

○ 장애인(13세 이상)/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의제강제추행	3년9월 - 6년	3년 - 5년6월		
의제강간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강제추행	7년6월 - 12년	7년 - 11년		
유사강간	7년6월 - 13년6월	8년 - 12년		
강간	9년 - 15년	9년 - 14년	13년6월 - 21년	13년 - 25년

○ 균형법상 성범죄(상해/치상)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군인등강제추행	3년9월 - 7년6월	4년 - 7년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 강간	5년3월 - 9년	5년 - 8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감경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누범) 등 (기본영역+1.5배 가중)	동종 누범 (가중영역)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13년6월 - 18년	11년 - 14년	16년6월 - 21년	13년 - 25년

(2) 수정안: 서술식 기준 부기(의견일치)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⁵⁾

(유형 및 권고 형량범위 표 생략)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추가 검토]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달리 강도강간에 대해 강간죄(13세 이상) 형량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도강간죄 특정범죄가중(누범)의 형량범위 가중'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함

- ① 특정강력범죄(누범) 등의 형량범위를 1.5배 이상 가중, ② 특정강력범죄(누범) 등을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정하거나 동종 누범을 일반가중인자로 조정, ③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①방안의 경우, 성범죄에서만 특정강력범죄(누범) 형량범위 가중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움
- ②방안의 경우, 위 형량범위 가중과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량범위가 설정된 점, 각 누범 인자의 성격과 가벌성을 양형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움
- ③방안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범죄유형 분류의 체계, 각 유형의 법정형 하한과 가벌성,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것인바, 일부 불균형의 발생만으로 전체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 점, 불균형 발생 유형의 형량범위 조정(영역별 형량범위의 간격을 1.5배 이하로 조정 등)은 해당 유형의 영역별 형량범위 사이의 관계, 인접 유형의 영역별 형량범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움

5)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서술식 기준에 부기

4.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1)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수정(의견일치)

- 형법 제11조가 2020. 12. 8. 개정되었고(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위 개정 이후 신설 또는 수정된 범죄군(아동학대범죄 등)에서도 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음

(2) 처벌불원 관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수정(의견일치)

- 위 정비 원칙에 따른 범죄군
 - 성범죄의 경우 규범적, 양형정책적 차원에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인적 범익에 대한 범죄로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1-2 범죄군)에 해당함
- 위 정비 원칙에 따른 질적 구분
 - 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② 일반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③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⁶⁾
- 위 정비 원칙에 따른 정의규정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6) 다만, 2차 피해 추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음(32쪽 이하)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의 규정 불필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32쪽 이하에서 봄)

나. 특별가중인자

(1)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표현 수정 여부(견해 대립)

1안(8인 지지)	2-1안(3인 지지)	2-2안(2인 지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모욕감 증대'

(가) 제1안(현행유지, 8인 지지)

-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판례상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개념인데, '불쾌감', '모욕감' 등의 용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므로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음
-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은 구별되는 것이고, '성적 수치심'의 해석상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우려도 없음

(나) 제2안(변경안, 5인 지지)

- 양형기준 대상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등과 달리 처벌규정의 문언에서 성적 수치심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성적 수치심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용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제2-1안('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 3인 지지)

- '불쾌감'은 '모욕감'보다 넓은 범위의 감정을 포섭하는 표현인 점, 현재 국회에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점(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성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도 훈령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점(대검찰청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 고려하여, 간명하게 '성적 불쾌감'으로만 표현함이 상당

○ 제2-2안('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모욕감'으로 수정, 2인 지지)

-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굳이 '불쾌감'으로 한정할 필요 없음

(2) 누범 및 전과 관련: '동종'의 범위 수정(견해 대립)

제1안(수정안, 9인 지지)	제2안(현행유지안, 4인 지지)
○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포함)	○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일반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정의규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정의규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가) 제1안(수정안, 9인 지지)

-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에서 누범 및 전과 관련 '동종'의 범위에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나) 제2안(현행유지안, 4인 지지)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다른 양형기준과 달리 애초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성범죄가 성매매범죄 등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매매범죄 등에서 성범죄를 동종 취급하여 가중하는 것과 성범죄에서 성매매범죄 등을 동종 취급하여 가중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음. 성매매범죄 등 전과와 성범죄 전과는 그 성격이나 맥락이 다르므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성범죄로 한정하는 현행 기준 유지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정의규정 수정(의견일치)

- 군대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등 관계에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정의 규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4)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의견일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위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그것을 비교하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점,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중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정의규정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다. 일반감경인자

(1) 진지한 반성(견해대립)

○ 정의규정 신설

제1안(8인 지지)	제2안(5인 지지)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추가 사정이 없는 반성문 및 기부자료 제출은 제외한다).

○ 제1안(아동학대범죄에 준함, 8인 지지)

- 위 양형인자의 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의규정을 마련하되, 아동학대범죄에서 이미 의결한 대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
- 반성문 및 기부자료 제출 등이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면 되고, 너무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제2안(괄호 문구 추가, 5인 지지)

- 다수의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감형이 된다는 일반의 인식을 불식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으면서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만 제출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큼(반성문 대필사업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음. 반성문 대필 전문 사이트만 33개에 달함)
- 또한 가해자가 정작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서 기부자료를 제출하여 감형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기부를 중단한 사례도 있음
- 따라서 '(추가 사정이 없는 반성문 및 기부자료 제출은 제외한다)'는 괄호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2) 강제추행죄 중 일반강제추행(1의 나. 제1유형)의 일반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신설 여부(견해대립)

(가) 제1안(신설, 3인 지지)

- 성범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비교하면 살인죄 등 주요 강력범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성범죄 양형기준은 가중요소에 비하여 감경요소가 매우 적은 편인데 강제추행죄 중 기본 유형인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유형의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벌성이 낮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

분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타당성 정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으나, 이에 포섭되지 아니한 '미필적 고의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감경요소의 추가를 고려할 만함
- 실무상 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고의에 대한 심리가 양형 이유에 현출되어 실증적 경험을 축적할 수도 있음
- 상당수의 범죄군(살인, 사기, 폭력, 조세, 손괴 등)에서 미필적 고의를 특별양형인자로 두고 있음

(나) 제2안(현행유지, 10인 지지)

- 일반강제추행에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불법이나 비난가능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견일치)

-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반가중인자

(1) 인적 신뢰관계 이용 예시 추가(견해대립)

제1안(7인 지지)	제2안(6인 지지)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

<p>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자 - 지인의 자녀 - 의료인과 환자 - 상사와 부하 - 사제(司祭)와 신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자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가) 제1안(일부 예시규정 신설, 7인 지지)

- 현행안은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정의규정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한정적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그 예시로 두 가지 경우만 열거하고 있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표현만으로는 다수의 ‘인적 신뢰관계 이용’ 사건들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제자 및 지인의 자녀 외에 실제 다수 발생되고 있는 사례를 이에 준하는 가중적 요소의 예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제2안(‘제자’로 수정하는 외에 현행유지, 6인 지지)

- 최근 신설된 유사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정도만으로 실무상 양형인자의 적용에 문제없음
- 상호 신뢰가 형성되기 있어서는 관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인과 환자 등의 예시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

(2)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에 ‘2차 피해’ 추가(견해대립)

제1안(기존 정비안, 8인)	제2안(2차 피해 추가안,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 [정의규정]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중인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내지 2차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명예 훼손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p>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p>	<p>○ [정의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가) 제1안(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8인 지지)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2차 피해까지 추가할 필요 없음
- 2차 피해의 범위는 무제한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요함

(나) 제2안(2차 피해 추가, 5인 지지)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2차 피해’를 양형인자에 반영할 시의성 및 필요성이 큼
- 현재 일반가중인자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규정되어 있으나,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무고, 인사상 불이익 등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⁸⁾

7)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인자 신설

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3)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의견일치)

- ① 2009년 최초 양형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면서 특별가중인자로 설정, ② 2010년 수정 양형기준에서 주거침입 등 강간 등과 함께 2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일반가중인자로 수정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주거침입 등 강간 등의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상향되었는바,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자체를 일반가중인자로 둘 필요는 없음. 다만 친족관계가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닌 청소년 강간 등, 강도강간 유형에서는 일반가중인자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중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4)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의견일치)

- ① 2009년 최초 양형기준에서 청소년 강간을 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면서 일반가중인자로 설정, ② 2010년 수정 양형기준에서 주거침입 등 강간 등과 함께 2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일반가중인자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로 유지

-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강간 외 다른 범죄들의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상향되었는바, 구성요건적 요소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범행’ 자체를 일반가중인자로 둘 필요는 없음. 다만 청소년이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닌 주거침입 등 강간 등, 강도강간 유형에서는 일반가중인자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중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5. 집행유예 기준

가. 수정안(다수의견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표)]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운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u>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u> ● 임신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피고인이 교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u>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생략)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포함)

- 양형인자에서 처벌불원 등 합의 관련 양형요소가 수정됨에 따라, 이를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반영함 → ‘**성적 수치심**’, ‘**동종 전과**’, ‘**미필적 고의**’ 및 ‘**2차 피해**’ 인자는 양형인자 논의와 연동하여 변경
-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과 같이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을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피고인이 고령**’은 그 의미의 불명확성,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도 등을 이유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디지털 성범죄 등) 이를 반영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는 2013년 양형기준 수정시 양형인자에서 삭제되었고, 미성년자(13세 이상), 심신미약자, 장애인, 피보호·감독·구급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폭행·협박 간음 뿐 아니라 위계·위력 간음도 별도의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위계·위력 사용’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규정한 것은 상호 모순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①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이상’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 ‘강도강간’에는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함**

Ⅲ. 향후 일정

- 일시 : 2022. 6. 20. (월) 오후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변경 가능)
-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